


□ 기본사항

플랫폼명	판매 가능 품목	기타 입점기준
	[핸드메이드 제품 일체] 의류, 잡화, 악세사리,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화장품, 비누, 발향제품, 반려동물용 교체비누, 사료, 전통주, 세척제 등	선정 후 1주일 이내 하단 입점 필수준비서류 제출이 가능한 사업체 (해당자)

□ 입점 필수 준비서류

**idus 입점 필수준비서류**

- 기본서류**(추가 허가서류 필요없음. 핸드메이드 기준 통과 시)  
 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통장의 사본 각 1부
- 가공식품**  
 사업자 등록증,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신고증, 통신판매업신고증, 통장의 사본 각 1부
- 농축수산물**(가공없이 원물을 판매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통장의 사본 각 1부
- 농축수산물**(직접 생산한 원물을 OEM 방식으로 가공하여 판매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유통전문판매업영업신고증, 통신판매업신고증, 통장의 사본 1부
- 화장품 판매**  
 사업자 등록증, 화장품제조업및책임판매업(제조판매업), 통신판매업신고증, 통장의 사본 각 1부
- 비누 판매**  
 사업자 등록증, 화장품제조업및책임판매업(제조판매업), 통신판매업신고증, 통장의 사본 각 1부
- 발향(디퓨저, 방향제, 캔들, 밀랍캔들 등)**  
 사업자 등록증, 위해우려제품자가검사인증성적서 전체페이지(용도/제형/주성분 별로 제출), 통신판매업신고증, 통장의 사본 각 1부
- 반려동물용 교체 비누**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통장의 사본 각 1부  
 ※ 동물용 제품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효능을 기재, 광고하지 않는 비누의 경우, 현재는 검사 의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객 신뢰를 위하여 사람용 비누로 검사를 마치신 경우, 해당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 사료**  
 사업자 등록증, 사료제조업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통장의 사본 각 1부
- 반려동물 직접 분사 탈취제(질병 치료/경감/처치/예방 목적 시)**  
 사업자 등록증, 동물용의약품제조업허가(신고)증, 통신판매업신고증, 통장의 사본 각 1부
- 전통주**  
 사업자 등록증, 주류제조면허증, 주류통신판매승인(신청)서, 통신판매업신고증, 통장의 사본 각 1부
- 세척제**  
 사업자 등록증, 위생용품제조업신고증(세척제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품목제조보고서 必 / 업태에 기재), 통신판매업신고증, 통장의 사본 각 1부
- 인체소독제, 생리대 등 의약외품**  
 사업자 등록증, 의약외품제조업신고증(용기 등에 필수 기재사항 등을 표시 必), 통신판매업신고증, 통장의 사본 각 1부
- 사물에 뿌리는 소독제**  
 사업자 등록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신고증, 통신판매업신고증, 통장의 사본 각 1부